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10.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3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 10. 4
-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 10.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 제7호 가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제8호, 안 별표1, 비고 제7호‘나’·‘다’목 및 안 제15호)
- (3) 자녀 가정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할인율을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막내가 만 13세 이하 발급)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 할인으로 변경함
(안 별표1, 비고 제17호)
- (4)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1, 비고 제20호 및 제21호)
- (5)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김기영 전문위원)

기존 장애인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명확히 하여 부정한 감면요구를 차단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인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을 추가 확대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 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시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체육시설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자의 차량에 대한 감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이용시간(50분~70분) 및 운동 후 샤워시설 이용시간을 감안한 90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주민편익을 고려한 반영이라 사료되며, 기타 개정되는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